

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별지 제1호의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7조제4항”을 “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2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,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